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비고 제7호 중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경형·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보유 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제3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7 비고 제8호 중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허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